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937-01

농림수산식품부
연구용역보고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법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

2011. 10.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법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10.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김 유 환

《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이 순 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장 민 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현 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요약문

1. 연구의 개요

□ 연구명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법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구

□ 연구기간 : 2011. 7. 27 ~ 2011. 10. 27(3개월)

□ 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추진과정

○ 보고회

- 착수보고회

1. 일시 : 2011. 8. 8(월) 15:00- 16:00

2. 장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중간보고회

1. 일시 : 2011. 9. 30(금) 14:00- 16:00

2. 장소 : 농림수산식품부 1층 소회의실

- 최종보고회

1. 일시 : 2011. 10. 17(월) 14:00- 18:00

2. 장소 : 농림수산식품부 6층 영상회의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동년 7월 25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2012년 7월 26일 시행).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어업구조개선의 정의, 어업실태조사,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어선감척사업의 추진 절차, 어선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어업선진화 추진 등으로, 총 6장, 25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은 폐지된다.

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안취지

최근 해양환경의 변화로 수산자원의 서식 상태가 달라지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국내외 어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그동안 「수산업법」에 따라 어선감척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왔던 어업구조개선사업을 어선의 감척 뿐만 아니라 어업의 종류의 통합·변경, 어구의 사용량·규모의 조정 등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어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하여만 추진하였던 어선감척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에 의하여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어업구조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위임사항

- ① 어업구조개선의 정의
- ② 어업실태조사
- ③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등의 수립
- ④ 어선감척사업의 추진 절차
- ⑤ 어선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 ⑥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 ⑦ 어업선진화 추진

4) 위임법령의 구체안 작성을 위한 연구 필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12개 사항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한 7개 사항에 대한 안을 작성하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작성해야 한다.

(2) 연구의 목적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합리적 기준 및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여 하위법령 제정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

(1) 대통령령 제정안의 주요내용

가.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실태조사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과 실태조사 세부항목 및 방법을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어선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안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어업자 신청에 의한 감척 대상자 선정방법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선 감척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행정관청에 의한 감척 대상자 선정방식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행정관청에 의한 직권감척 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취하는 신규용자 제한, 면세유 연간 공급량 조정 등의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8조)

마. 어선 감척에 따라 폐업한 어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폐업한 어업자에게 취업 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어선 감척에 따라 폐선되는 어선과 어구의 처리·매각 및 승인 절차와 감척대상 어선의 매각 대금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4조 내지 제17조)

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8조)

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시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방법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19조 및 제20조)

(2) 농림수산식품부령 제안안의 주요내용

가. 감척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감척대상 어업의 지정 시기 및 감척대상자 선정 시기의 변경 등’으로 규정함 (안 제2조)

나.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어업자단체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내에 일정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는 등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직권에 의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절차를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라. 어선감척을 희망하는 자의 감척지원금의 지급 신청·결정통지,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과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제8조)

마. 폐업한 어업자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와 감척에 따라 실직한 어업종사자의 생활안정자금의 지급신청 절차를 규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등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방법을 규정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어업 종류의 통합 등에 따라 경영개선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어업자가 신청하는 경영개선지원금과 어선 현대화 경비 등의 신청 방법과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출·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자. 어선감척을 위하여 사업집행주체에서 매입한 어선·어구를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의 매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안 제16조)

목 차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5
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15
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안취지	15
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위임사항	16
4. 위임법령의 구체안 작성을 위한 연구 필요	16
제 2 절 연구의 목적	16
제 2 장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검토	17
제 1 절 법률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17
1. 법률의 제정배경	17
2.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27
제 2 절 하위법령 위임사항 분석	29
1. 대통령령 위임사항	29
2. 농림수산식품부령 위임사항 목록	30
제 3 장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하위법령(안) 마련	33
제 1 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33
1. 어업실태조사 항목, 조사 내용 및 방법	33
2.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절차, 선정의 세부기준 및 선정 방법	35
3. 신규 용자 제한 및 면세유 연간 공급량 조정 세부기준 및 절차	43
4. 폐업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47
5. 어업선진화를 위해 지급하는 경영개선지원금에 관한 사항	49
6. 지원금확정을 위한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50
7. 감척대상 어선·어구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52
제 2 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련	54
1. 직권에 의한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방법	54

2.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	55
3. 연근해어업 폐업자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58
4.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또는 폐업지원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59
제 4 장 하위법령안	61
제 1 절 대통령령 제정령안	61
제 2 절 농림수산식품부령 제정규칙안	84
제 5 장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및 제도적 개선방안	117
제 1 절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추진 방안	117
1. 근거 및 내용	117
2. 추진 방식(안)	117
3. 참고 사항	117
제 2 절 연근해어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118
1. 어업면허 제도	118
2. 어업허가 제도	119
참 고 문 헌	123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동년 7월 25일 공포되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2012년 7월 26일 시행).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어업구조개선의 정의, 어업실태조사,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어선감척사업의 추진 절차, 어선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어업선진화 추진 등으로, 총 6장, 25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은 폐지된다.

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안취지

최근 해양환경의 변화로 수산자원의 서식 상태가 달라지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국내외 어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그동안 「수산업법」에 따라 어선감척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왔던 어업구조개선사업을 어선의 감척뿐만 아니라 어업의 종류의 통합·변경, 어구의 사용량·규모의 조정 등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어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하여만 추진하였던 어선감척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에 의하여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어업구조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3.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위임사항

- ① 어업구조개선의 정의
- ② 어업실태조사
- ③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등의 수립
- ④ 어선감척사업의 추진 절차
- ⑤ 어선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 ⑥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 ⑦ 어업선진화 추진

4. 위임법령의 구체안 작성을 위한 연구 필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12개 사항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한 7개 사항에 대한 안을 작성하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작성해야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합리적 기준 및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여 하위법령 제정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장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검토

제 1 절 법률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1. 법률의 제정배경

최근 해양환경의 변화로 수산자원의 서식 상태가 달라지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국내외 어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산업법」에 따라 어선감척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왔던 어업구조개선사업을 어선의 감척뿐만 아니라 어업의 종류의 통합·변경, 어구의 사용량·규모의 조정 등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어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하여만 추진하였던 어선감척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에 의하여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어업구조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1) 현황 및 여건

연근해어업은 어선(漁船)과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자연자원인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생산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어업의 종류는 41개로 분류되며 어업에 이용되는 어선은 54천여척, 연간 120만톤 내외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과도한 어선세력으로 인하여 자원선점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어선 노후화에 따른 산업구조가 낙후되어 있다.

○ 어선세력은 적정세력 대비 19.2% 초과

* ('10) 연근해어선 척수(47,559척) / 적정 어선척수(39,903척) ⇒ 7,656척 과도

○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어선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 중

* 동해구저인망어선 43척 중 선령 20년 이상 37척(86%), 대형선망어선 142척 중 97척(68%), 기선권현망어선 412척 중 231척(56%)

어업경쟁력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연·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 '94년부터 '10년까지 15,337억원 투입, 연근해어선 16,642척 감척¹⁾

1)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참조.

구 분	합 계		일반 감척		국제 감척	
	척수(척)	금액(억원)	척수(척)	금액(억원)	척수(척)	금액(억원)
합 계	16,642	15,337	15,334	8,894	1,308	6,443
연안어선	14,066	5,253	14,066	5,253	-	-
근해어선	2,576	10,084	1,268	3,641	1,308	6,443

* 국제감척은 어업협정 발효 이후 '99~'02년까지 실시

감척사업도 가변적인 수요에 따른 예산집행상의 애로 및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 저인망류 어선의 구조조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 어업인들이 유가, 어획상황 등 경영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연례적인 예산 이월, 집행잔액 발생('09년 354억원 불용)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원화된 사업 추진으로 유류소모가 많고 어획강도가 높은 저인망 업종 등의 사업 참여 부진

* 감척지원 조건인 폐업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참여 저조

(2) 제정 필요성

1) 어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해양환경 변화, 자원남획, 고유가 및 FTA 확산 등 대외 여건변화에 맞춰 어업구조 선진화가 필요하다.

- 최근 41년간('68~'09년) 표면수온 1.31℃ 상승
- * (해역별) 동해 +1.39℃, 서해 +1.29℃, 남해 +1.24℃, (계절별) : 겨울 +1.41℃, 여름 +0.77℃
- 최근 50여년간 연근해 수산자원은 약 55% 수준으로 감소
- * ('60) 1,520만톤 → ('09년) 831만톤
- '04~'08년 4년간 유가는 3.3배 상승
- * 경유 드럼당 가격 : ('04) 75,655원 → ('08) 231,200원
- DDA협상 관련 Lamy 사무총장은 2011년 4월까지 협상 Text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수산보조금 협상도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
- * 국내적으로는 면세유 등 어업운영비가 금지대상에 포함될 경우에 대비하여 면세유의 특정성을 약화시키는 방식 등 국내 대비책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

2) 수산자원량 대비 어선척수 과다

- 최근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 아직도 연근해 어선세력은 수산자원량에 비해 19.2% 과도한 실정('10년말 기준)

구 분	어선척수('10)	적정어선척수	감척대상 어선척수	
			건 수	비 율(%)
합 계	47,559	39,903	7,656	19.2
연안어업	44,727	37,562	7,165	19.1
근해어업	2,832	2,341	491	21.0

* 연구용역 : 연안어선('10. 군산대), 근해어선('07. 전남대), 구획어업(2,397척) 제외

- 특히, 어획강도가 높은 11개 업종은 어업허가 건수가 허가정수대비 95~34%를 초과함

<2010년도 어업허가정수 대비 30% 초과업종>

어업의 종류	허가정수 (A)	'10년말 허가처분(B)	정리대상 (C=B-A)	비율 (C/A*100)
동해구저인망	20	39	19	95.0
패류형망	72	137	65	90.3
동해구트롤	23	39	16	69.6
연안통발	4,680	7,640	2,960	63.2
장어통발	40	63	23	57.5
서남구저인망(외)	29	42	13	44.8
대형트롤	37	52	15	40.5
대형저인망(외)	34	47	13	38.2
잠수기	175	236	61	34.9
기타통발	159	214	55	34.6
소형선망	35	47	12	34.3

- 정부는 감척사업 참여유도를 위해 폐업지원금의 상향조정(50%→80%), 선령기준 완화(10→6년), 무 조업선 참여기회 부여 등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해왔으나, 현행 사업이 어업자 희망에 따라 추진되어 어업인들은 어업여건*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는 등으로 사업부진

- * 어업인들은 유가변동, 어획상황 등 경영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 * 현행 지원금 : 어선·어구의 잔존가액(100%)+폐업지원금[평균 수익액의 3년분(연안 100%, 근해 80%이내 최저 입찰제)]

○ 예산의 효율적 활용,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구조개선 대상 어업으로 직권지정 등 사업추진 필요

※ 어획량 대비 감척사업비 집행비교('10년 기준)

대상업종	주요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비교			
	동해구트롤	연안복합	대형트롤	연안복합
척당 평균 어획량	1,510.5톤	1.78톤(849척) * 1.78톤×849척=1,511톤	1,151.4톤	1.78톤(647척) * 1.78톤×647척=1,151톤
척당 감척비용	1,112백만원	46백만원(391억원) * 46×849척=39,054백만원	1,459백만원	46백만원(298억원) 46×647척=29,762백만원

3) 외국의 어선감척 사례

어선감척사업은 수산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해 미국, 호주, EU, 노르웨이, 일본, 대만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추진 중인 정책으로서, 특히, 호주, 대만 등에서는 어업허가권 감소를 위하여 자율신청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매입에 응하지 않는 등 부작용으로 강제적 감척제도를 도입 추진한 사례가 있다.

4) 국회 및 어업인 동향

① 국회 농림수산위원회('10 국정감사 및 '11년 예산국회 지적)

어획강도가 낮은 업종의 감척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의 고갈 우려가 큰 동해구저인망어업 등에 대하여 정부가 폐업지원금 현실화 방안을 강구, 감척 조치하는 등 강력한 어업구조개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어업인들도, 향후 어업구조의 개선 없이는 해양환경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변동, FTA 확산에 따른 수입수산물 급증 등 대비 강력한 구조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 FTA 추진은 우리 연근해어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큰 문제로 정부의 충분한 사전대책이 요구된다.

※ 최근 3년 평균 중국 수입수산물 현황

- 전체 수입 수산물의 32.5% 차지(평균관세 17.7%, 연간 평균 981백만\$)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결과, '10.6」분석대상 수산물 95개 품목중 74개 (78%) 품목이 한국보다 중국이 우위로 판단, 특히 냉동 넙치류, 날개다랑어, 게, 새우, 대하 등은 한국보다 높은 가격경쟁력 보유

4) 감척 단일 방식에서 다양한 어업구조개선제도 도입 필요

지금까지는 어업인의 자발적 희망 감척에 의존해 옴에 따라 어획강도가 크고 업종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주요 대상 업종이 감척되지 않아 불균형적인 감척으로 구조 개선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어선 척수를 줄이는 방식의 구조조정에서 어업구조를 개편하여 선진화하는 방식으로 전환(어업구조조정 → 어업구조개선), 예를 들면, 특별 감척, 자율감척, 어선 선진화 등 다양한 구조개선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5)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행 감척사업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감척사업 규모 및 내용 등이 단편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일반감척(수산업법), 국제감척(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지원 특별법)

⇒ 어업구조개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감척과 일반감척의 규정을 통합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의 조정 및 정비 필요

(3) 감척계획

1) '11년 이후 7,656척(연안어선 7,165척, 근해어선 491척)

구 분	어선척수 ('10) (A)	적정어선척수	감척대상 어선척수(연구용역)		
			척 수(B)	예상 비용	비율(B/A)
합 계	47,559	39,903	7,656척	5,547억원	19.2
연안어업	44,727	37,562	7,165척	3,583억원	19.1
근해어업	2,832	2,341	491척	1,964억원	21.0

* 예상비용은 척당 평균 감척비용을 기준으로 작성(연안 50백만원, 근해 400백만원)

2) 추진실적

○ '94~'10년까지 연근해어선 16,642척 감척(15,337억원)

구 분	합 계		일반 감척		국제 감척	
	척수(척)	금액(억원)	척수(척)	금액(억원)	척수(척)	금액(억원)
합 계	16,642	15,337	15,334	8,894	1,308	6,443
연안어선	14,066	5,253	14,066	5,253	-	-
근해어선	2,576	10,084	1,268	3,641	1,308	6,443

* 국제감척은 어업협정 발효 이후 '99~'02년까지 실시

3) '11년도 추진계획

○ 684척 412억원(연안어선 664척 332억원, 근해어선 20척 80억원)

* 예산현황 : ('07) 1,294억원→ ('08) 3,688→ ('09) 1,298→ ('10) 775→ ('11) 412

4) 보조금 및 융자금 현황(단위 : 억원)

구 분	'11년 예산	법령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국비 기준)					
		소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합 계	444	4,297	793	876	876	876	876
보조사업	444	2,697	473	556	556	556	556
융자사업	-	1,600	320	320	320	320	320

* 융자사업은 법률 제정시 어선현대화 사업으로 매년 320억원 융자 지원 계획

(4) 연근해어선 어업생산성 현황

(단위 : 톤, 천원)

년도	어업생산량		어선세력			생산성 현황						자원량 (만톤)
	어획량	생산금액	총마력	총톤수	총척수	마력당		톤당		척당		
						어획량	생산액	어획량	생산액	어획량	생산액	
1990	1,471,810	1,416,235,667	3,671,238	451,273	57648	0.401	386	3.26	3,138	25.53	24,567	835
1991	1,226,779	1,627,803,972	4,186,165	455,390	56,911	0.293	389	2.69	3,575	21.56	28,603	825
1992	1,206,542	1,736,647,355	4,802,381	450,335	55,795	0.251	362	2.68	3,856	21.62	31,126	816
1993	1,526,139	2,283,539,653	5,227,312	448,408	53,163	0.292	437	3.40	5,093	28.71	42,954	808
1994	1,486,357	2,520,606,111	5,921,211	444,110	50,061	0.251	426	3.35	5,676	29.69	50,351	801
1995	1,425,213	2,479,441,522	6,511,143	445,196	51,357	0.219	381	3.20	5,569	27.75	48,279	794

년도	어업생산량		어선세력			생산성 현황						자원량 (만톤)
	어획량	생산금액	총마력	총톤수	총척수	마력당		톤당		척당		
						어획량	생산액	어획량	생산액	어획량	생산액	
1996	1,623,822	2,735,079,190	6,728,398	439,261	50,927	0.241	406	3.70	6,227	31.89	53,706	788
1997	1,367,406	2,483,356,678	7,778,148	439,315	56,418	0.176	319	3.11	5,653	24.24	44,017	782
1998	1,308,336	2,293,637,349	10,177,626	438,205	59,722	0.129	225	2.99	5,234	21.91	38,405	777
1999	1,336,062	2,280,019,536	8,585,947	434,142	66,776	0.156	266	3.08	5,252	20.01	34,144	773
2000	1,189,000	2,329,483,389	10,105,398	397,869	68,629	0.118	231	2.99	5,855	17.33	33,943	768
2001	1,252,099	2,468,308,722	11,650,684	386,180	67,990	0.107	212	3.24	6,392	18.42	36,304	764
2002	1,095,812	2,487,006,174	13,720,325	362,162	67,411	0.080	181	3.03	6,867	16.26	36,893	760
2003	1,096,526	2,405,810,605	13,570,189	345,126	66,698	0.081	177	3.18	6,971	16.44	36,070	757
2004	1,076,687	2,609,717,094	13,942,367	330,202	66,063	0.077	187	3.26	7,903	16.30	39,503	767
2005	1,097,041	2,705,954,841	13,680,800	322,809	64,579	0.080	198	3.40	8,383	16.99	41,901	783
2006	1,108,835	2,751,251,398	11,699,023	312,580	63,518	0.095	235	3.55	8,802	17.46	43,315	801
2007	1,152,299	2,939,109,483	11,699,023	308,511	63,110	0.098	251	3.74	9,527	18.26	46,571	812
2008	1,284,890	3,222,256,094	10,188,935	280,707	57,177	0.126	316	4.58	11,479	22.47	56,356	818
2009	1,226,966	3,640,436,977	10,303,753	257,292	53,799	0.119	353	4.77	14,149	22.81	67,667	831
2010	1,134,389	3,913,898,092	10,090,689	249,951	50,749	0.112	388	4.54	15,659	22.35	77,123	851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08년 이후의 자원량은 자원회복 목표 시나리오에 기초한 예측치)

(5) 연근해어선 척수 대비 감척필요 척수(2010말 기준)

구 분	어업허가		어선등록 (2010) (A)	적 정 어선세력 (B)	연구용역 대비		비 고
	허가정수	처분건수 (2010)			초과내역		
					척수 (A-B)	비율 (B/A,%)	
합 계	55,345	61,367	47,559	39,903	7,656	119.2	
연 안 어 업	52,613	58,091	44,727	37,562	7,165	119.1	'10년 용역
연 안 자 망	17,351	18,274	13,471	12,467	1,004	108.1	
연 안 안 강 망	631	561	342	500	-158	68.4	
연 안 선 망	331	245	204	135	69	151.1	
연 안 통 발	4,680	7,640	4,847	5,782	-935	83.8	
연 안 들 망	781	818	273	173	100	157.8	
연 안 조 망	1,143	846	308	60	248	513.3	
연 안 선 인 망	14	7	6	8	-2	75.0	
연 안 복 합	27,682	29,700	25,276	18,437	6,839	137.1	
근 해 어 업	2,732	3,276	2,832	2,341	491	121.0	'07년 용역
대형저인망(외)	34	47	47	27	20	174.1	
대형저인망(쌍)	38	34	75	64	11	117.2	
동해구저인망	20	39	43	19	24	226.3	
서남구저인망(외)	29	42	40	27	13	148.1	

구 분	어업허가		어선등록 (2010) (A)	연구용역 대비			비 고
	허가정수	처분건수 (2010)		적 정 어선세력 (B)	초과내역		
					척수 (A-B)	비율 (B/A,%)	
서남구저인망(짚)	7	9	15	10	5	150.0	
대 형 트 롤	37	52	53	30	23	176.7	
동 해 구 트 롤	23	39	39	23	16	169.6	
대 형 선 망	29	25	153	124	29	123.4	
소 형 선 망	35	47	79	76	3	103.9	
근 해 채 낚 기	618	699	453	531	-78	85.3	
기 선 권 현 망	68	77	415	338	77	122.8	
근 해 자 망	569	707	409	327	82	125.1	
근 해 안 장 망	199	238	224	167	57	134.1	
근 해 봉 수 망	61	45	5	8	-3	62.5	
잠 수 기	175	236	228	149	79	153.0	
근 해 통 발	239	310	167	149	18	112.1	
패 류 형 망	72	137	80	34	46	235.3	
근 해 연 승	479	493	307	238	69	129.0	

- * 허가정수 : 연안어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 근해어선 「수산업법시행령」제40조
- * 연구용역 : 연안어선 “2010. 군산대학교”, 근해어선 “2007 전남대학교”
- * 선단조업어선 : 쌍끌이 2척, 대형선망 6척, 소형선망 3척, 기선권현망 6척을 기준으로 작성
- * 구획어업, 정치망어업 등은 통계에서 제외하고, 척당 1~3건까지의 복수허가는 고려하지 않음

(6)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 초과 업종

허가정수 대비 30% 초과 업종(11종)

어업의 종류	'10년말 허가건수(A)	허가정수 (B)	정리대상 건수 (C=A-B)	비율 (C/A*100)
연안어업	1 종			
연안통발	7,640	4,680	2,960	63.2
근해어업	10 종			
동해구저인망	39	20	19	95.0

어업의 종류	'10년말 허가건수(A)	허가정수 (B)	정리대상 건수 (C=A-B)	비율 (C/A*100)
패류형망	137	72	65	90.3
동해구트롤	39	23	16	69.6
장어통발	63	40	23	57.5
서남구저인망(외)	42	29	13	44.8
대형트롤	52	37	15	40.5
대형저인망(외)	47	34	13	38.2
잠수기	236	175	61	34.9
근해통발	214	159	55	34.6
소형선망	47	35	12	34.3

□ 허가정수 대비 50% 초과 업종(5종)

어업의 종류	'10년말 허가건수(A)	허가정수 (B)	정리대상 건수 (C=A-B)	비율 (C/A*100)
연안통발	7,640	4,680	2,960	63.2
동해구저인망	39	20	19	95.0
패류형망	137	72	65	90.3
동해구트롤	39	23	16	69.6
장어통발	63	40	23	57.5

(7) 어선감척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척, 백만원)

구분	합계	일반감척			국제감척			
		소계	연안	근해	소계	어선감척	실업지원	어구비
'94	척수	54	54	-	-	-	-	-
	금액	4,910	4,910	-	-	-	-	-
'95	척수	117	111	6	-	-	-	-
	금액	10,410	9,113	1,297	-	-	-	-
'96	척수	136	110	26	-	-	-	-
	금액	13,656	7,991	5,665	-	-	-	-
'97	척수	135	48	87	-	-	-	-
	금액	27,200	4,227	22,973	-	-	-	-

제 2 장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검토

구분	합계	일반감척			국제감척				
		소계	연안	근해	소계	어선감척	실업지원	어구비	
'98	척수	159	159	63	96	-	-	-	-
	금액	27,513	27,513	5,287	22,226	-	-	-	-
'99	척수	730	78	-	78	-	652	2,415	27
	금액	357,185	15,180	-	15,180	342,005	330,844	10,654	507
'00	척수	140	109	36	73	-	31	369	-
	금액	31,162	22,500	3,695	18,805	8,662	1,566	7,096	-
'01	척수	586	77	55	22	-	509	4,660	25
	금액	248,914	10,811	5,742	5,069	238,103	196,786	40,442	875
'02	척수	280	164	21	143	-	116	1,441	-
	금액	96,783	41,283	3,805	37,478	55,500	43,786	11,714	-
'03	척수	60	60	16	44	-	-	-	-
	금액	19,011	19,011	1,504	17,507	-	-	-	-
'04	척수	698	698	639	59	-	-	-	-
	금액	17,384	17,384	6,672	10,712	-	-	-	-
'05	척수	841	841	841	-	-	-	-	-
	금액	33,300	33,300	33,300	-	-	-	-	-
'06	척수	1,598	1,598	1,598	-	-	-	-	-
	금액	50,278	50,278	50,278	-	-	-	-	-
'07	척수	2,922	2,922	2,836	86	-	-	-	-
	금액	129,417	129,417	100,000	29,417	-	-	-	-
'08	척수	5,263	5,263	4,880	383	-	-	-	-
	금액	322,146	322,146	197,298	124,848	-	-	-	-
'09	척수	1,758	1,758	1,663	95	-	-	-	-
	금액	66,950	66,950	36,787	30,163	-	-	-	-
'10	척수	1,165	1,165	1,095	70				
	금액	77,500	77,500	54,700	22,800				
합계	척수	16,642	15,334	14,066	1,268	0	1,308	8,885	52
	금액	1,533,719	889,449	525,309	364,140	644,270	572,982	69,906	1,382

* '10년도 사업은 진행중으로 감척수는 계획 척수임

(8) 연근해어선 업종별 등록현황(2010년말)

(단위 : 척, 톤, 마력)

구분	척수	톤수	마력수
총계	47,559	239,272	9,545,510
연안어업	44,727	112,824	7,864,263
연안자망	13,471	35,662	2540,395
연안안강망	342	2,222	122,441

구 분	척 수	톤 수	마 력 수
연안통발	4,847	12,800	872,235
연안들망	273	1,430	71,632
연안선망	204	1,188	60,944
연안조망	308	1,639	92,323
연안선인망	6	24	1,246
연안복합	25,276	57,859	4,103,047
근해어업	2,832	126,448	1,681,247
대형저인망(외)	47	3,140	26,353
대형저인망(쌍)	75	8,584	81,280
동해구저인망	43	2,383	19,441
서남구저인망(외)	40	2,289	19,821
서남구저인망(쌍)	15	822	6,578
동해구트롤	39	2,064	37,858
대형트롤	53	7,273	77,240
대형선망	153	22,361	200,426
소형선망	79	1,133	38,990
근해채낚기	453	17,551	253,951
근해유자망	409	10,888	208,240
근해안강망	224	10,967	127,555
근해봉수망	5	35	869
잡수기	228	1,093	86,255
근해통발	167	9,469	107,541
패류형망	80	820	30,106
근해연승	307	8,861	173,684
기선권현망	415	16,715	185,059

* 주) 톤수 및 마력수는 잠정치임

2.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1) 법률의 구성

법률은 6개장 2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47호로 제정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2012년 7월 26일 시행된다.

(2) 주요내용

1) 어업구조개선의 정의(안 제2조)

① 지금까지의 어업구조개선사업은 「수산업법」 등에 따라 어선감척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왔으나, 어선감척사업만으로는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데 미흡한 실정임.

②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의 감척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 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어업구조개선에 포함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

③ 종합적·체계적인 어업구조개선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2) 어업실태조사(안 제4조)

①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어업종사자의 현황,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3)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① 어업구조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추진전략, 재원 규모 등을 포함하는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과 어업 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4) 어선감척사업의 추진 절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① 지금까지의 어선감척사업은 어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만 의존하여 추진한 결과 어획장도가 높은 자원남획형 어업에 대한 감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어업자의 신청 외에 행정관청의 직권에 의한 방법으로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의 목표량, 추진계획 등을 어업자단체 등에게 고지하고, 어업자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거나

감척 대상 어업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며,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되,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5) 어선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안 제12조)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어업자에 대하여 신규 용자를 제한하거나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6)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및 제14조)

① 어선감척사업으로 인하여 경영하고 있는 어업을 폐업한 어업자와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어선·어구에 대하여 감정가격에 따라 매입하고,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7) 어업 선진화 추진(안 제16조 및 제1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선진화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등 어업 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대상 어업자에 대하여 해당 어선, 어구 등을 감정가격에 따라 매입하고 경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 2 절 하위법령 위임사항 분석

1. 대통령령 위임사항

연 번	조 문	내 용
1	제4조(어업실태조사) 제1항제3호	어업실태조사 사항

제 2 장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검토

연 번	조 문	내 용
2	제4조(어업실태조사) 제4항	어업실태조사의 내용/방법
3	제11조(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제5항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절차, 선정의 세부기준 등
4	제12조(어선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어선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의 세부기준 및 절차 (신규용자제한 조치, 면세유 연간공급량 조정 조치의 세부기준 및 절차)
5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제1항	폐업지원금
6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제4항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에 대한 전업 및 재취업 지원
7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제1항	경영개선지원금
8	제18조(감정평가 등) 제1항	지원금 확정을 위한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 의뢰
9	제19조(매입한 어선/어구의 처리) 제2항	어선/어구의 취득과 처리절차
10	제21조(권한의 위임)	장관 권한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위임
11	제22조(업무의 위탁) 제1항	장관 및 시도지사 업무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또는 장관 지정 기관/ 단체 또는 협회에 대한 위탁
12	제25조(과태료) 제2항	과태료의 부과 징수

2. 농림수산식품부령 위임사항 목록

연 번	조 문	내 용
1	제6조(어선감척시행 계획의 수립) 제5항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어선감척시행계획의 경미 한 변경

연 번	조 문	내 용
2	제9조(감척대상어업의 자율신청) 제3항	자율신청 시 감척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등
3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제4항	직권지정시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절차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
4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제2항	어업자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
5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제5항	전업(업종전환) 및 재취업(다른 산업으로 취업)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
6	제15조(이의신청) 제5항	지원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7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제4항	경영개선지원금의 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

제 3 장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하위법령(안) 마련

제 1 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1. 어업실태조사 항목, 조사 내용 및 방법

(1) 어업실태조사의 의의

어업실태조사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말한다.

어업실태조사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조사와는 구별된다.

‘어업구조개선’사업이란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의 감척(減隻)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漁具)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제2호 참조).

(2) 어업실태조사와 유사한 제도

1) 수산업법 제75조의 어업구조개선 실태조사

수산업법 제75조의 어업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3항과 제4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구조개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제3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어업구조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제4항).”고 정하고 있다.

수산업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관련 어업인 단체, 그 밖의 수산 관련 연구기관(대학을 포함한다)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어업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수산업법 제75조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로

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 시행된다. 따라서 관련 내용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

2)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8조는 관리청으로 하여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3) 허가어업에 대한 실태조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의2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 어업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태조사의 구체적 항목으로는 동 규칙 동조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및 어선검사증서
2. 해당 어선의 출항·입항 및 어선의 조업위치 보고에 관한 사항
3. 해당 어선의 유류 사용실적
4. 어획물의 양륙 및 매매실적
5. 그 밖에 조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어업실태조사 항목

법 제4조제1항은 실태조사의 항목으로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현황,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하여 어업실태조사의 항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어업실태조사의 항목으로는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으로서 다음 항목을 규정한다.

1. 자산 및 부채현황
2. 조업상황 : 어선현황, 조업일수, 어획량 등
3. 수지상황 : 어업수입, 어업외 수입, 어업비용 등
4. 그 밖에 어업인의 어업에 대한 인식 등

동조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수량 및 선령
2.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표준 수량
3. 잔존가치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의장품·어구 등 시설의 범위
4. 연근해어업의 종류별·선질별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 단가

(4) 어업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법 제4조제4항은 어업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해 수산업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어업구조개선 실태조사의 내용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어업실태조사는 조사년도의 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업종별·선질별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단가 등 과거의 실태를 조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연도의 어선감척사업 지원금 산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어업실태조사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및 관련 어업인 단체, 그 밖의 수산 관련 연구기관(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관련 단체·기관은 필요한 경우 어업을 경영하는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관련 어업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어업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 조사 일시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절차, 선정의 세부기준 및 선정 방법

(1) 어선감척의 의의 및 목적

어선감척은 어업구조조정 의 일환으로서, 연근해어업인원의 불확실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목적은 연근해어업 인원 수준에 적합한 어업노력량을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통한 어업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과잉 어업세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자원남획으로 수산자원의 보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어업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나 어업생산성의 감소로 어업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악화된 어업을 축소하고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을 추진한 이래 2008년까지 연안어선 11,280척, 근해어선 2,380척 등 총 13,660척을 감척하였고, 이에 따라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에는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제감척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연근해 어업인원 및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어업정책상 감척이 필요한 대형인망류업종(탄소 이행강제)과 제주갈치 연승어업(한일어업협정 이행), 불법어업 가능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제도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

(2)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의 절차

1)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제5조)

① 기본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이 법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동법 제5조제1항).

② 기본계획 사항

1.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3.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자원 규모와 연도별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어업구조개선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립절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법」 제

2)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009.12, 17-18면 참조

② 감척시행계획 사항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어선 감척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어선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선 감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어선감척 대상 어업의 종류 선정

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어업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되 다음 각 호의 어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61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정수(許可定數)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2.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3.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상되는 어업으로서 다른 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어업
4.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
5. 수입자유화 및 어업환경 변화 등으로 어업경쟁력 또는 어업생산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어업

④ 어선감척시행계획 수립 절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해당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척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통보 및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보완요청 및 보완대책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감척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계획의 검토 및 변경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감척시행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3) 어업선진화시행계획 수립(제7조)

① 어업선진화시행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선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선진화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선진화시행계획 사항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업 종류의 통합, 어구의 사용량 조정 등의 추진계획
3. 제2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제16조 각 호에 따른 어업선진화 사업 추진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업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어선감척시행계획 수립절차 준용(동조 제3항)

4) 감척 대상 어업 고지(제8조)

○ 고지 대상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

○ 고지내용 :

1. 어선감척사업 추진의 필요성
2. 어선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4.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어선감척사업 추진의 필요성
2. 어선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4.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 5) 감척대상 어업의 자율신청(제9조)

- 어선감척계획서 제출 :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 등
- 제출대상자 : 근해어업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 시·도지사
- 계획서 내용 :
 1.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어선 감척에 필요한 금액에 관한 사항
 3. 어선 감척의 효과에 관한 사항
-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
-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 지정여부 결정
- 통지 : 지정 결과와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2. 어선 감척에 필요한 금액에 관한 사항
- 3. 어선 감척의 효과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고,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결과와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감척대상 어업의 직권지정(제10조)

- 지정요건 : 자율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 어선감척계획서 작성 : 근해어업 - 시도지사와 협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 의견청취 : 해당 어업자단체 등
- 심의 : 해당 수산조정위원회
- 통지 : 지정 내용과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① 직권지정 요건

어업자단체등이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어선감척계획서 작성 및 절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려면 어선 감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해당 어업자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 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제11조)

- 신청에 의한 감척 대상자 선정(제1항) :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
 - 직권에 의한 감척 대상자 선정(제2항) : 신청이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선정
 - 직권선정 기준 :
 1. 어선의 선령(船齡)
 2. 어선의 규모(톤수, 마력)
 3. 조업실적
 4.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정도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선정시 협의 : 근해어업 - 시도지사와 협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 심의 : 해당 수산조정위원회
 - 통지 : 선정내용, 지원내용 및 어선 감척 절차
 - 감척대상자 선정 30일 전 홈페이지 등 공고
- 법 제11조제2항은 직권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감척대상자 선정 기준 및 업종 별 대상척수를 공고하는 기간을 장기화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30일 전까지로 규정

(3) 선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1) 어업자 신청에 의한 감척 대상자 선정

① 감척대상 어업의 종류 등의 고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업자의 신청에 의한 어선감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척대상 어업의 종류, 사업의 규모 및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감척신청

감척대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가 어선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안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감척대상자 선정 기준

- 1. 감척지원금 집행의 효율성
- 2.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 3. 다른 어업과의 관계
- 4. 어선의 선령
- 5. 조업실적

④ 그 밖에 신청 및 입찰 추진절차 등의 방법 등

감척 신청 자격 및 조건, 입찰 추진절차 및 방법, 어선·어구 등의 잔존가치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행정관청에 의한 감척대상자 선정

① 감척대상자 선정기준 등의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업종별 대상척수를 감척대상자 선정 3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준별 가중치의 부여 및 채점기준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척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척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각 기준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채점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잔존가치 평가방법 등의 농림수산식품부령 위임

어선·어구 등의 잔존가치 평가방법, 계약체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3. 신규 용자 제한 및 면세유 연간 공급량 조정 세부기준 및 절차

(1) 신규용자 제한 및 면세유 연간 공급량 조정의 의의

어선감척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어업자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신규 용자를 제한하는 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규용자 제한 등의 조치는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참여가 미진한 어업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 축소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업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어선감척사업의 직권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1)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신규 용자 제한 조치

【수산업법】

제86조 (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 3 조 (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융자금의 지원 한도, 융자금의 기간 및 조건 등 융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융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면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이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융자제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동 규칙 제3조의 융자금집행지침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거나, 별도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 연간 공급량 조정 조치

①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변천과정

○ 연근해어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현행 어업용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등의 감면제도는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연근해어선에 공급하는 석유에 대한 석유류세의 면세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도입당시에는 어업용 중 연근해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만을 면세의 대상으로 하여 현행 제도보다 그 대상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었다. 즉1971년 조세감면규제법개정(1971년 12월 29일 법률 제2332호)에서 제11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동 조항에서는 “연근해어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그 후 1976년 개정법률(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2932호)에서는 삭제되었다가 1977년 개정법률(1977년 12월 19일 법률 제3017호)에서 제11조의2 부가가치세의 면제규정으로 다시 신설되었다(동조제2항제2호). 이 개정은 당시 석유류세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로 편입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다시 1981년 전문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481호)에서는 종전 제11조의2에서 제74조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다.

○ 어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면세

1989년 개정법률(1989년12월30일 법률 제4165호)에서는 제74조제1항제2호를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여 어업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 교통세의 면제

1993년 전문개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66호)에서는 제100조제1항제2호와 제107조제1호로 이관되면서 목적세인 교통세에 대하여도 면제하도록 하였다. 그 후 1998년 전문개정법률(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4호)에서는 범명이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뀌고 관련 조문도 제106조제1항제7호와 제111조로 이관되었다.

○ 어업용 석유류 등 면세조항의 통합 및 사후관리 강화

2000년 개정법률(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6297호)에서는 제106조제1항제7호와 제111조제3호를 통합하여 제106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그 취지는 IMF 후유증과 농산물 수입개방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태풍피해 및 어업구역의 축소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② 현행 어업용 면세유 및 공급·관리제도

현행법상 어업용 면세유에 관한 주된 규정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동 시행규칙 등이 있다.

○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농·어민등”이라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6의2 제1항).

이와 같이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4항),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동법 동조제6항).

○ 면세유류 연간한도량의 결정

면세유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신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동법 동조제15항).

○ 면세유류 연간 한도량의 관리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 면세유의 공급체계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민이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른 조합에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선박 및 시설의 취득·양도 또는 어민의 사망, 이농 등으로 그 신고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동조제3항).

(2) 면세유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절차

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조정조치의 통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른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로서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해야 하는 내용으로서는 1. 면세유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당초 공급량 대비 면세유 공급량 조정비율 및 조정 기간, 3. 면세유 공급량 조정 사유 등을 들 수 있다.

면세유 연간 공급량 조정에 관한 내용을 통보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해당 어업자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서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면세유 연간 공급량 조정기준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조정 제한선을 설정하여 과도한 제한을 피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규제의 정도를 예측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별표에서 제한기준의 상한선을 연차 별(3개년차)로 설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4. 폐업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폐업지원금의 의의

법 제13조제1항은 법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의 제정으로 폐지되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제4조에서 폐업지원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제 4 조 (어업자등에 대한 지원) ①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어업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등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어선·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및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업지원금
 2. 어장의 이동이나 업종의 전환으로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 ②~③ (생략)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출기준과 방법 및 지원대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폐업지원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9 조 (폐업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산출방법·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입법례와 법의 규정을 비교하면, 입법례에서는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지원기준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그 밖에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2) 폐업지원금에 관한 시행령안

대통령령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지원기준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3항과 같이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및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조하여 법령안을 구성할 수 있다.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제 3 조 (어업자등에 대한 지원) ① (생략)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어구의 감정가격 및 평년수익액은 각각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선·어구의 잔존가액 및 평년수익액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지원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생략)

제00조 (폐업지원금의 지원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폐업지원금은 제2항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평년수익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산출한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어업선진화를 위해 지급하는 경영개선지원금에 관한 사항

(1) 경영개선지원금에 관한 법규정(제17조)

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 종류의 통합·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업자의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제17조제1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경영개선지원금의 지원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동조제3항). 지원금의 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동조제4항).

현재,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업자원 감소와 경쟁조업 심화 등으로 어업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며, 어선의 노후화 및 어업경비의 상승으로 어업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업구조개선사업을 지금처럼 어선감척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어업구조개선사업의 추진을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기반 구축 등으로 보다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어업환경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어업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고, 현재 빈발하는 업종간의 어업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다양한 연근해 어업의 종류(41종)를 조정해야 하며, 일부 업종 외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어구의 규모를 대상 수산자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필요 등이 있다.

(2) 경영개선 지원금의 지원기준

제00조 (어업선진화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의 지원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어업의 종류가 통합 또는 변경되기 이전에 어업을 경영하던 어업자에 한한다.

6. 지원금확정을 위한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1) 감정평가 등에 관한 규정(법 제18조)

지원금확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제1항),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2항).

법은 지원금 확정을 위한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2)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어업손실액 조사기관 지정에 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73호, 2011.10.24 전부개정된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이 있고, 이에 따라 14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10조 (감정평가등) ①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검증등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증인 및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용역조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기관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에 따른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 나목 1)에서는 전문기관에 의한 손실액의 산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행정관청은 제66조제1항에 따른 서류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조사를 하게 한 후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손실액의 평가를 의뢰하되,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보상액을 부담할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에게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손실액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 등 용역조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게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를 함께 의뢰할 수 있다.

(3) 시행령안

제00조 (용역조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기관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에 따른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7. 감척대상 어선·어구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1) 어선·어구의 처리에 관한 규정(법 제19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매입한 어선·어구를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업구조개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매각 또는 양여, 해외수출 또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무상 제공, 공공사업에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제1항).

어선·어구의 취득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다(제2항).

(2) 어선·어구의 처리에 관한 내용

매입한 어선·어구의 처리에 관해서는 어선·어구의 처리, 어선·어구의 매각절차, 어선·어구의 처리 승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한다.

법에서는 시·도지사의 장관에 대한 승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 내용을 둘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 승인권한을 창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어선·어구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처리방법별 어선·어구의 수량 및 대상어선의 규모
3. 처리하고자 하는 어선·어구의 관리방법
4. 기타 어선·어구의 처리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어선·어구를 매각 또는 양여하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어선·어구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2조 (어선·어구의 매각절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어선·어구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어선·어구의 매입가격, 그 상태 및 매각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어선·어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은 기금에 납입하거나 시·도에 귀속한다.

④ 삭제 <2010.4.2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어선·어구의 처리승인)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어구를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어선·어구처리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행령안

1) 어선·어구의 처리

제00조 (어선·어구의 처리)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처리방법별 어선·어구의 수량 및 대상어선의 규모

3. 처리하고자 하는 어선·어구의 관리방법

4. 기타 어선·어구의 처리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어선·어구를 매각 또는 양여하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어선·어구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어선·어구의 매각절차 등

제15조 (어선·어구의 매각절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 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어선·어구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어선·어구의 매입가격, 그 상태 및 매각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한 어선·어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은 「수산업법」 제76조의 수산발전 기금에 납입하거나 시·도에 귀속한다.

④ 제1항의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어선·어구의 처리 승인

제16조 (어선·어구의 처리승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를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어선·어구 처리계획서를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련

1. 직권에 의한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방법

(1) 직권에 의한 감척대상어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법 제10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신청 기간 내에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다(제1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려면 어선 감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해당 어업자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게 알려야 한다(제4항).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제5항)

(2) 직권감척의 필요성

'94년부터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연근해어업은 자원감소 등으로 경쟁력이 여전히 취약한 구조이다. 원인으로서는 어업인 희망에 따라 감척을 추진한 결과, 어획 강도가 낮은 연안어업 위주의 감척이 추진되었고, 어획강도가 높고 고비용·저효율 업종을 감척해야 자원조성 효과가 나타나므로 필요시에는 행정기관이 감척대상 어업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시행규칙 안

제00조 (직권에 의한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어선 감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자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2 조 (지원금의 지급신청) ①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사본 1부
2.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선박의 등록관청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한다)

- 4. 선박등기부 등본 1부
- 5.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이 확인한 서류 또는 어업이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6.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폐지동의서 1부
 - ②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한다)
- 3.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이 확인한 서류 또는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4. 어장의 이동 또는 업종의 전환에 관한 동의서 1부

제00조 (감척 지원금의 지급신청 및 결정통지)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한다)
- 3.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이 확인한 서류 또는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어업허가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 2.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선박의 등록관청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어선검사증서(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선박등기부 등본
 5. 어선·어구 해체증명서(감척대상자가 개별계약에 의해 해체처리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감척사업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7.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폐지동의서 1부
 8. 기타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업 집행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③ 사업집행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 후 제10호 서식에 의한 감척사업 지원금의 교부결정서를 감척사업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폐업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출기준과 방법

제00조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① 어선·어구의 감정가격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선·어구의 잔존가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② 폐업지원금은 어업별·톤급 단위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가격을 기초로 산정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어업자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폐업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제00조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 ① 사업 시행주체는 감척대상 어선의 감척지원금이 결정된 경우 그 내용을 사업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 집행주체는 계약 대상자별 지원금이 확정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감척 대상 어선 및 어구 등의 인도
 2. 어업허가증의 반납
 3. 당해 어선원부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해소 유무 확인
 4. 해체증명서(계약상대자가 개별계약에 의해 해체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어선등록 말소 사실 확인
 6. 기타 사업 시행주체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기타 감척대상 어선의 선정을 위한 입찰 추진절차 및 방법, 어선·어구 등 잔존

가치 평가방법, 감척 대상어선의 어선과 어구의 처리방법 등 어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다.

3. 연근해어업 폐업자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1) 폐업자에 대한 지원규정(법 제13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4항).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제5항).

(2) 시행규칙 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규칙】

제 4 조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① 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대상은 전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실직농어업인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농지·어선 등을 매도한 농어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장기임대한 농어업인
3. 농외소득의 증대가 필요한 영세농어업인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어업 경영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실직한 어선원에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00조 (폐업한 어업자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어 소유하던 어선을

감척하고 폐업한 어업자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업 교육·훈련 지원은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 감척한 어선의 톤수
2. 감척한 어선으로 어업에 종사한 기간
3. 그 밖에 감척하기 전 전체 소득 중 어업소득 의존도 등

③ 시·도지사가 법 제13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4.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또는 폐업지원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에 관한 법규정(제15조)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또는 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선정 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1항).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신청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제2항),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제3항).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제4항),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제5항).

(2) 시행규칙 안

1) 이의신청의 절차

제00조 (이의신청의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근해어선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안어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선명, 업종, 톤수(신통수를 말한다), 건조일자

3. 이의신청의 사유

②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척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00조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소속 과장급 공무원 2인

2. 연구기관 또는 학계 관계자 2인

3. 감척 대상자 선정 또는 지원금 결정 관련 외부 전문가 2인

④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하위법령안

제 1 절 대통령령 제정령안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여기서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선의 감척(減隻)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漁具)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위임한 12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어업실태조사)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실태조사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표준 수량
2. 잔존가치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의장품·어구 등 시설의 범위
3. 업종별·선질별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 단가

제 3 조 (어업실태조사의 세부항목 및 방법)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실태조사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근해어업 종류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연령별 현황
2. 조업상황 : 어선현황, 조업일수 및 어획량 등
3.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자산 및 부채 현황
4.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수지상황 : 어업수입, 어업외 수입, 어업비용 등
5. 기타 어업인의 어업에 대한 인식 등

② 어업실태조사 기준년도는 조사년도의 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종별·선질별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 단가 등 과거의

실태를 조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실태조사 결과를 다음연도 어선감척사업 지원금 산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 4 조 (어업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어업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어업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현황
- 2.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어업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자의 어선, 어장, 사업장 및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어선, 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어업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설】

법 제4조는 “어업실태조사 사항”과 “어업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어업실태조사의 목적은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법 제4조의 어업실태조사와 유사한 현행 제도로는 「수산업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조사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구조개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는데, 이는 주로 감척사업을 위한 어선수출을 파악하는데 치중하고 있어 어업 구조개편을 위한 연근해어업 경영체의 경영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5년마다 실시되어 정책결정을 위한 적시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75조가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수산업법 제75조 및 관련 하위법령의 내용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이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업의 실태조사와 자원의 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주요내용이 이관될 필요가 있다.

법 제4조의 어업실태조사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업구조개선은 어선감척사업과 어업선진화 추진을 위한 일련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내용들이 실태조사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조법령】

○ 수산업법

제75조 (어업구조조정의 촉진) ①~② (생략)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구조개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어업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시행령

제52조 (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및 관련 어업인 단체, 그 밖의 수산 관련 연구기관(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관련 단체·기관은 필요한 경우 어업을 경영하는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관련 어업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

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의2 (실태조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한 어업에 대하여 법 제48조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제31조·제32조에 관한 사항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및 어선검사증서
2. 해당 어선의 출항·입항 및 어선의 조업위치 보고에 관한 사항
3. 해당 어선의 유류 사용실적
4. 어획물의 양륙 및 매매실적
5. 그 밖에 조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청,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 조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생산실적
2. 농외소득 활동과 관련된 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현황
3. 농외소득 활동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4. 농외소득 활동과 관련된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지원인력의 규모
5. 그 밖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정기조사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정기조사 외에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하는 조사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 3 조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조사시기 및 조사주기 등 조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의 활용을 위한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3>

제 4 조 (실태조사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의2.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

제 4 조 (어업자 신청에 의한 감척 대상자 선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업자 신청에 의한 어선감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척대상 어업의 종류, 사업의 규모 및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감척대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가 어선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안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척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감척지원금 집행의 효율성
2.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3. 다른 어업과의 관계
4. 어선의 선령
5. 기타 조업실적 등

④ 감척 신청 자격 및 조건, 입찰 추진절차 및 방법, 어선·어구 등의 잔존가치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 5 조 (행정관청에 의한 감척 대상자 선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기준 및 업종별 대상척수를 감척대상자 선정 3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척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각 기준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채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어선·어구 등의 잔존가치 평가방법, 계약체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11조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업자단체등의 동의를 거쳐 기준을 달리 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어선의 선령(船齡)
2. 어선의 규모(톤수, 마력)
3. 조업실적

4.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정도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자에게 선정 내용, 지원 내용 및 어선 감척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절차, 선정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설】

○ 어선 감척 대상자선정의 흐름

(1)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제5조) …… 수산자원 조사·평가 / 어업실태조사

- 기간 : 5년 계획
- 수립자 : 장관
- 절차 : ① 사전 의견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시군구청장
② 심의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③ 통보·공고 - 시도지사에게 통보 / 공고
- 검토 및 변경 - 매년 기본계획 검토, 필요하면 변경

(2) 어선감척시행계획 수립(제6조) ※ 어업선진화 시행계획 수립(제7조)

- 수립자 : 근해어업 - 장관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 - 시·도지사
- 내용 : 2. 어선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3. 감척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계획에 관한 사항
- 절차 : ① 사건의견청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시·도지사 의견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② 심의 : 해당 수산조정위원회
③ 통보·보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장관에게 보고
④ 보완요청 : 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감척시행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청, 시·도지사는 보완대책 마련
- 검토 및 변경 - 매년 감척시행계획 검토, 필요하면 변경

(3) 감척 대상 어업 고지(제8조)

- 고지 대상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
- 고지내용 : 1. 어선감척사업 추진의 필요성
2. 어선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4.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4) 감척대상 어업의 자율신청(제9조)

- 어선감척계획서 제출
- 제출자 : 어업자단체 등
- 계획서 내용 : 1.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어선 감척에 필요한 금액에 관한 사항
3. 어선 감척의 효과에 관한 사항
-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 지정여부 결정
- 통지 : 지정 결과와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

(5) 감척대상 어업의 직권지정(제10조)

- 지정요건 : 자율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 어선감척계획서 작성 : 근해어업 - 시도지사와 협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 의견청취 : 해당 어업자단체 등
- 심의 : 해당 수산조정위원회
- 통지 : 지정 내용과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

(6)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제11조)

- 신청에 의한 감척 대상자 선정(제1항) :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

- 직권에 의한 감척 대상자 선정(제2항) : 신청이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선정
- 직권선정 기준 : 1. 어선의 선령(船齡)
2. 어선의 규모(톤수, 마력)
3. 조업실적
4.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정도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선정시 협의 : 근해어업 - 시도지사와 협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 심의 : 해당 수산조정위원회
- 통지 : 선정내용, 지원내용 및 어선 감척 절차

제 6 조 (신규 용자 제한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용자 등 제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절차를 「수산업법」 제 86조제2항에 따라 수립되는 자금의 용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규 용자의 제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용자금취급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규 용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신규 용자 제한 사유

제 7 조 (면세유 연간 공급량 조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 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세유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면세유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당초 공급량 대비 면세유 공급량 조정비율 및 조정 기간
3. 면세유 공급량 조정 사유

②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 용자 제한 또는 면세유 연간 공급량 조정을 통보 받은 용자금취급기관의 장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해당 어업자와 용자금 업무 또는 면세유 공급 업무를 취급하는 관련기관에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8 조 (신규 용자 제한 및 면세유 연간 공급량 조정 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규용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12조 (어선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①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신규 용자를 제한하는 조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설】

법률은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어업자에 대하여 신규 용자를 제한하거나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이 도입하려는 신규용자 제한 등의 조치는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참여가 미진한 어업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 축소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업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어선감척사업의 직권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이다.

현재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용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이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용자 제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동 규칙 제3조의 용자금집행지침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거나, 별도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 (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용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용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

제 3 조 (용자금집행지침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용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용자금의 지원 한도, 용자의 기간 및 조건 등 용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용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용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면 제4조에 따른 용자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용자금취급기관의 지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용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운영하기 위하여 용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제 9 조 (어선 감척 추진 조치에 대한 지위 승계) ① 법 제12조에 따라 어선감척 추진을 위한 조치를 받은 어업자가 소유한 당해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조치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44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어선등”이라 한다)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
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
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폐업지원금의 지원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평년수익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산출한 평년수익액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폐업지원금은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폐업한 어업자에 대한 지원)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 준비금
2. 그 밖에 폐업한 어업자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13조 (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업 교육·훈련
 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용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해 설】

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어선·어구를 감정가격에 따라 매입하고,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감척 대상 어선의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게 실직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직업훈련 등 재취업을 위한 지원제도도 미비한 문제가 있음.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조건 비교>

구 분	현행 지원조건	법률 제정시 지원조건
어업자	■ 어선·어구의 잔존가액+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80%에서 입찰제(대통령령)	■ 어선·어구의 잔존가액+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어업종사자	■ 지원 없음. ■ 다만, 어업협정으로 인한 감척사업의 경우 통상임금 6월분의 실업지원금 지급	■ 일정기간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 다만, 어업협정으로 인한 감척사업의 경우 통상임금 6월분 지원

구 분	현행 지원조건	법률 제정시 지원조건
		■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시책강구

【참조법령】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제 4 조 (어업자등에 대한 지원) ①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어업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등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어선·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및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업지원금

2. 어장의 이동이나 업종의 전환으로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출기준과 방법 및 지원대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 3 조 (어업자등에 대한 지원) ① (생략)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어구의 감정가격 및 평년수익액은 각각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선·어구의 잔존가액 및 평년수익액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지원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년 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생략)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③ (생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어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농어업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전업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업훈련준비금, 직업훈련비 및 가족생계비를 포함한 직업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2. 취업준비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 4 조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① 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대상은 전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실직농어업인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농지·어선 등을 매도한 농어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장기임대한 농업인
3. 농외소득의 증대가 필요한 영세농어업인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어업 경영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실직한 어선원에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 (어업선진화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의 지원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어업의 종류가 통합 또는 변경되기 이전에 어업을 경영하던 어업자에 한한다.

【법】

제17조 (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 어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 종류의 통합·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해당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제1호에 따른 어업 종류의 통합·변경 또는 어구의 사용량·규모의 조정으로 인하여 어업자의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게 어선의 현대화, 어선 장비·설비의 개량 등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제7조에 따른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법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업선진화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등 어업 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대상 어업자에 대하여 해당 어선, 어구 등을 감정가격에 따라 매입하고 경영개선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업자원 감소와 경쟁조업 심화 등으로 어업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며, 어선의 노후화 및 어업경비의 상승으로 어업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업구조개선사업을 지금처럼 어선감척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어업구조개선사업의 추진을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기반 구축 등으로 보다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어업환경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어업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고, 현재 빈발하는 업종간의 어업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다양한 연근해 어업의 종류(41종)를 조정해야 하며, 일부 업종 외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어구의 규모를 대상 수산자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필요 등이 있다.

【참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 조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정부는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그 자금의 비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04.3.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까지 1조 1천억원을 지원하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부채심사및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환 연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 그가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약정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여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2004.3.5, 2008.2.29>

③ 삭제 <2004.3.5>

제13조 (용역조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기관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에 따른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법】

제18조 (감정평가 등)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

사연구·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 설】

법률은 지원금 확정을 위한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어업손실액 조사기관 지정에 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73호, 2011.10.24 전부개정된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이 있고, 이에 따라 14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참조법령】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10조 (감정평가등) ①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검증등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증인 및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용역조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기관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에 따른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07.10.31, 2010.4.20>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개정 2007.10.4>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 나목 1)

나. 전문기관에 의한 손실액의 산출 등

1) 행정관청은 제66조제1항에 따른 서류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

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조사를 하게 한 후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손실액의 평가를 의뢰하되,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보상액을 부담할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에게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손실액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 등 용역조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게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를 함께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어선·어구의 처리)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처리방법별 어선·어구의 수량 및 대상어선의 규모

3. 처리하고자 하는 어선·어구의 관리방법

4. 기타 어선·어구의 처리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어선·어구를 매각 또는 양여하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어선·어구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 (어선·어구의 매각절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어선·어구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어선·어구의 매입가격, 그 상태 및 매각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한 어선·어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은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거나 시·도에 귀속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어선·어구의 처리승인)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를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어선·어구 처리계획서를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제19조 (매입한 어선·어구의 처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매입한 어선·어구를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구조 개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각 또는 양여(讓與)
2. 해외수출 또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무상 제공
3. 공공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와 방법

② 어선·어구의 취득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매입한 어선·어구의 처리에 관해서는 어선·어구의 처리, 어선·어구의 매각절차, 어선·어구의 처리 승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한다.

【참조법령】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어선·어구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처리방법별 어선·어구의 수량 및 대상어선의 규모
3. 처리하고자 하는 어선·어구의 관리방법
4. 기타 어선·어구의 처리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어선·어구를 매각 또는 양여하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어선·어구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2조 (어선·어구의 매각절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어선·어구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어선·어구의 매입가격, 그 상태 및 매각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4,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어선·어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은 기금에 납입하거나 시·도에 귀속한다. <개정 2001.11.24>

④ 삭제 <2010.4.2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 (어선·어구의 처리승인)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어구를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어선·어구처리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 (감척대상 어선 매각 대금의 처리 등) 감척대상 어선의 매각대금의 처리, 어업허가의 취소 및 지원금 지급, 감척대상 어선의 해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 (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어선 감척 계획서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척 대상자 선정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어업자에 대한 지원
4.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시책 마련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의 처리
6. 법 제18조에 따른 지원금 확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7. 법 제19조에 따른 매입한 어선·어구의 처리
8.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제19조 (업무의 위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4조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어촌·어항법 제57조에 의한 한국어촌어항협회
4.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의한 수산자원사업단
5. 국립수산과학원
6. 기타 어업실태조사를 주 업무로 설립된 법인 또는 전문단체

【법】

제2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 설】

【참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

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 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15, 2007.11.1, 2009.3.18>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2, 2008.12.18)

제20조 (과태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부과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②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폐업 어선·어구의 처리) 어업인등의 폐업으로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어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별표 1]

신규용자 제한 및 면세유 연간 공급량 조정 기준(제8조 관련)

제한사항	제한 기준의 상한선 (%)		
	1년차	2년차	3년차
용자금	20	30	50
면세유류	20	30	50

비 고

1. 감척대상 어선으로 직권지정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1년차라 하고, 1년차의 다음연도 및 그 다음연도를 각각 2년차 및 3년차라 한다.
2. 3년차까지 제한을 하였음에도 어업구조개선사업에 응하지 아니하는 어업자에 대하여는 3년차가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도 3년차에 해당하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3. 용자금지원, 면세유류 공급은 당해 연도 영어자금운용규정, 면세유류공급규정에 따라 실제 해당 어업자 및 어선에 지원 또는 공급하는 범위를 100퍼센트로 하여 산출 적용한다.

제 2 절 농림수산식품부령 제정규칙안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감척시행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감척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청취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① 감척대상 어업의 지정 시기 및 감척대상자 선정 시기의 변경
- ② 감척대상 어선·어구의 해체 및 처리 방식 변경
- ③ 감척대상자에 대한 어업허가 취소 및 지원금 지급 절차 등의 변경

【법】

제 6 조 (어선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감척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어선 감척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어선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선 감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어업실태 조사 결과에 기초하되 다음 각 호의 어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61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정수(許可定數)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2.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3.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상되는 어업으로서 다른 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어업
4.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
5. 수입자유화 및 어업환경 변화 등으로 어업경쟁력 또는 어업생산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어업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이하 “해당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척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감척시행계획 중 감척대상자 모집기간 등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감척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감척시행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해 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감척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에 내용의 일정한 부분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 참조법령을 참조하자면, 형식상으로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정한 것을 특정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와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경우가 있다.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의 내용을 보자면 주로 면적의 100분의 10안에서의 축소·확대,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의 변경,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계산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예라 할 수 있다.

어촌·어항법 시행령과 같은 형식으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조법령】

○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 5 조 (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총투자금액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어촌·어항법

제 6 조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어촌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 계획
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농림수산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6 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5 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22, 2009.12.15>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6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1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환경정비계획과 관련된 다른 농어촌정비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생활환경정비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제 3 조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

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 감척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사본 1부
 2. 감척대상어업 지정 신청 사유 1부
 3. 구성원의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척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 9 조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어선 감척에 필요한 금액에 관한 사항
3. 어선 감척의 효과에 관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고,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결과와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조 (직권에 의한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어선 감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①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업종에 종사하는 어업자 중 어선감척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서를 제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어획 강도, 허가 정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감척을 추진하여야 한다.

【법】

제10조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려면 어선 감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해당 어업자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감척 지원금의 지급신청 및 결정통지)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

국이 확인한 서류 또는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2.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선박의 등록관청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어선검사증서(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선박등기부 등본
5. 어선·어구 해체증명서(감척대상자가 개별계약에 의해 해체처리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감척사업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7.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폐지동의서 1부
8. 기타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업 집행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③ 사업집행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 후 제10호 서식에 의한 감척사업 지원금의 교부결정서를 감척사업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감척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업 교육·훈련
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용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참조법령】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 4 조 (어업자등에 대한 지원) ①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어업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등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어선·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및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업지원금

2. 어장의 이동이나 업종의 전환으로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출기준과 방법 및 지원대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규칙

제 2 조 (지원금의 지급신청) ①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2008.3.3>

1. 어업허가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사본 1부

2.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선박의 등록관청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선박등기부 등본 1부

5.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이 확인한 서류 또는 어업이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6.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폐지동의서 1부
 - ②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2008.3.3>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이 확인한 서류 또는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4. 어장의 이동 또는 업종의 전환에 관한 동의서 1부

제 7 조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① 어선·어구의 감정가격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선·어구의 잔존가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폐업지원금은 어업별·톤급 단위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어업자단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참조법령】**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 가. 감정평가
- (1)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당해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15(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와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붙임 3)에 의한다.

(3) 사업집행주체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4)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사업집행주체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12. 어업허가의 취소 및 지원금 지급

가. 시·도지사는 최종 사업대상자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어선·어구 및 어업허가증을 인도(반납)받은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개별 계약에 의해 해체처리하는 경우에는 해체증명서가 제출되어 어선등록을 말소한 후 지급하거나, 사업추진상 필요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는 감척 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감척대상 어선으로 결정된 어선의 선체, 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해 정부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선의 감척어선 지원금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및 손실액 산출기관 등(제69조 관련)

2.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산출기준

나. 면어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에서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란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한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잔존가액은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재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을 신청하지 않으면 손실액 산출에서 제외한다.

제 8 조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척사업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척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감척 대상 어선 및 어구 등의 인도
2. 어업허가증의 반납
3. 당해 어선원부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해소 유무 확인
4. 해체증명서(계약상대자가 개별계약에 의해 해체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어선등록 말소 사실 확인
6. 기타 사업 시행주체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감척대상 어선의 선정을 위한 방법, 감척 대상어선의 어선과 어구의 처리방법 등 어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 9 조 (폐업한 어업자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어 소유하던 어선을 감척하고 폐업한 어업자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업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어선의 톤수가 큰 어선
2. 어업의 소득의 증대가 필요한 영세 어업인

③ 시·도지사가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의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법】

제13조 (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감척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업 교육·훈련
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용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한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폐업 이전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자와 공동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 사본 1부
2. 선원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명부 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른 선원명부 1부
3. 어업허가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부(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폐업 이전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이의신청의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근해어선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연안어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선명, 업종, 톤수(신톤수를 말한다), 건조일자
3. 이의신청의 사유

②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척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평가단을 구성하여 이의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의 평가단의 구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 소속 과장급 공무원 2인
2. 연구기관 또는 학계 관계자 2인
3. 감척 대상자 선정 또는 지원금 결정 관련 외부 전문가 2인

④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어업선진화에 따른 어선·어구 등의 매입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에 대한 동의서(해당 어업인에 한한다) 1부

②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 지원금을 융자 또는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경영개선지원 보조금의 산출 및 결정) ① 어선별 경영개선지원 보조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text{어선별 경영개선지원금 금액} = (\text{기준 수익액} - \text{현실 수익액}) \times \text{어선별 지원계수} \times \text{조정계수}$$

② 제1항에서 어선별 경영개선지원 보조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각 요소별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준 수익액 : 어업의 종류가 통합 또는 변경되기 전의 최근 5년간 해당 업종의 어선 1척당 연도별 평균 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수익액을 말한다. 이 경우 최근 5년간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년 이상의 평균 수익액으로 산정한다.
 2. 현실 수익액 : 어업의 종류가 통합 또는 변경된 이후의 최근 5년간 해당 업종의 어선 1척당 연도별 평균 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수익액을 말한다. 이 경우 최근 5년간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2년 이상의 평균 수익액으로 산정한다.
 3. 어선별 지원계수 : 당해 업종의 평균 어선톤수, 어선 1척당 평균어획량을 고려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한다.
어선별 지원계수 = 대상 어선의 톤수/당해 업종의 평균 어선톤수 × 대상 어선의 평균 어획량/당해 업종의 평균 어획량
 4. 조정계수 :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경영개선 지원 보조금의 내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기준 수익액, 현실 수익액 산출요령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 (경영개선지원금 지급절차) ① 시·도지사가 경영개선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부터 제출받은 지급신청서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금액을 확정 후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시·도지사의 지원금액 산출 세부요령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 (어선·어구의 매각절차 등) ①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어구를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한다.
- ③ 낙찰자는 매매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1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감척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지침) ①농림수산물부장관은 어선감척을 위한 입찰 추진절차 및 방법, 어선·어구 등의 잔존가치 평가 방법, 감척대상 어선·어구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집행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제1항에 의한 집행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법령의 개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 표]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

1.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

가. 감정평가사가 어선감척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평가하되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하는 유형 고정자산 연수표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평가할 사항

1) 선 체

○ 선체는 총톤수 기준이며 구톤수일 경우 신통수로 환산하며 선종, 선질, 구조, 설비, 시공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조 단가를 적용하고 평가연수, 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감가 수정한다.

○ 선체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하여 평가한다.

<어선의 선질별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선 질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강 선	25	20
FRP	20	10

선 질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목	15	10

2) 기 관

- 기관은 주기관, 동력전달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주기관은 어선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원동기를 말하며, 실제 마력을 기준으로 하여 제작연월, 제작회사, 규격, 회전수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 원가를 결정하고 경과연수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 보조기관은 주기관 외의 원동기를 말하며, 현장 조사할 때 엔진 상태를 세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기관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시설물명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기 관	20	10

3) 의장품

- 의장품에 대한 평가는 복성식 평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복성식 평가법은 대상 물건별로 재조달 원가를 정한 후 정율법과 관찰감가법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 의장품의 종류는 어로활동에 필요한 기기류, 항해용 기기류, 법정 비품류 등 여러 종류의 의장품으로서 산출기관이 인정한 범위로 한다.
- 의장품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되어야 할 것은 제작연월, 회사명, 규격, 재질 등이며 의장품의 종류에 따라 규격, 재질 등 동일한 물건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 그 중에서는 불용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의장품 중 내용연수 3년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업종별 동 규모 어선의 어업인 평균 보유수량 2배 이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의장품에 대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율>

시설물명	내용연수(년)	잔존가치율(%)
의장품	15	10

※ 다만,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개정·시행('08.8.1.)에 따른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광력조정을 위해 제거한 집어등은 잔존가치에 포함함

4) 어 구

- 어구의 평가는 복성식 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되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감가수정은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 원가의 파악에 유의하여야 하고 내용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 수정에 유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어구의 내용연수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 어선별 어구의 표준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대응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업 종	어구명	규 격	표준수량	단 위
대형기저(외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대형기저(쌍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동해구기저)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서남구기저, 외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서남구기저, 쌍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근해트롤(대형트롤)	트롤	Warp, 어망, 전개판	2	틀
근해트롤(동해구트롤)	저층트롤어구	Warp, 어망, 전개판	2	틀
근해선망(대형선망)	선망	Warp, 어망	1	틀
근해선망(소형선망)	선망	Warp, 어망	2	틀
근해채낚기	자동조상기	-	-	-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	권현망	Warp, 어망	2	통
	건조기	1,050발 기준	2	대
	선별기		2	대
근해자망	자망	8톤~20톤 미만	15,000	미터
		20톤~40톤 미만	18,000	미터
		40톤 이상	21,000	미터
근해안강망	잡어용	어장돛 1개씩 포함	5	틀
잠수기	잠수어구	-	2	식
근해통발	장어통발	8톤~20톤	3,200	개
		20톤~40톤	5,000	개
		40톤 이상	7,000	개
	기타통발	8톤~20톤	2,500	개
		20톤~40톤	3,500	개

제 4 장 하위법령안

업 종	어구명	규 격	표준수량	단 위
	(홍게·게)	40톤 이상	5,000	개
	문어단지	8톤 이상	24,000	개
근해형망	형망	Warp, 어망	4	통
근해연승	주낙	-	1,000	바퀴
봉수망	봉수망	Warp, 어망	2	틀
자리돔들망	들망	Warp, 어망	2	틀

※ 다만, 아래 해역에서의 조업실적이 인정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적용

- 근해안강망 중 충남·경기·인천해역 : 10틀
- 근해통발(기타통발) 중 강원·경북해역 : 20톤 미만 4,000개, 20톤~40톤 5,500개, 40톤 이상 7,000개
- 근해자망 중 강원·경북해역 : 20톤 미만 38,000미터, 20톤~40톤 미만 49,000미터, 40톤 이상 75,000미터

※ 기선권현망 육상 가공시설(건조기, 선별기) 포함, 단 선단 전체가격의 3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선주 소유분에 한함)

어선감척 계획서 (행정기관용)

업 종		대상척수		
		척		
소요예산 (추산)		감척기간		
		년 ~	년	
감척의 목적				
감척대상 어선의 사후 용도				
감척 불응 시 조치 계획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연근해어업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용자 제한 및 면세유 연간 공급량 조정			
본 계획서(안) 확정을 위한 추진 일정(안)	시·도지사(시장·군수)와 협의	년	월	일 까지
	해당 어업자 단체 등의 의견 청취	년	월	일 까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년	월	일 까지
	계획안 최종 확정	년	월	일 까지
	※ 본 추진 일정은 행정 기관의 업무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제○항에 따라 어선 감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요청(의견조회) 하오니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년○○월○○일 까지 농림수산식품부(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시·도지사)

직인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농림수산식품부 : 30일 시·도 : 30일
-------------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어선내역	선 명	업 종
	신 톤 수	건조일자

대사리용인 인·감	본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신청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 인감 (인)

붙임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	-------------------------------

유의사항

※ 본 란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0조제0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입찰서

공고번호	입찰일자	
제 호	20	
입찰내용	건 명	
	금 액 금 원정(W)	
입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선박재원	선 명	어업의 종류
	신통수	건조일자

본인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 기관이 정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반납하고 어선을 폐선 처리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감도장)

귀하

어선감척사업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공고번호	
제 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계약상대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계약내용	어 선 명	어업의 종류(톤수)
	계약금액	일금 원정(W)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지체상금율	0.15%
	어업허가증 반납일자	20 . . 까지
	어선 반납일자/장소	20 . . 까지
	제재사항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해당 어선의 감정평가수수료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시·도의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어선감척사업 최종 사업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해당 시도 계약담당관

(서명 또는 인)

계약상대자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어선감척사업 계약조건(필요시) 1부 2.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1부(생략) 3. 어선 장비 등 물품내역서 1부
------	-------------------------------------------------------------------------

불용어구매입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어업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 류	명 칭	어구의 규모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명			
	어선번호	건조일자		
	톤 수	선체재질		
	기관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육상디젤 <input type="checkbox"/> 디젤		기관의 마력
기 타	승선원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어구의 매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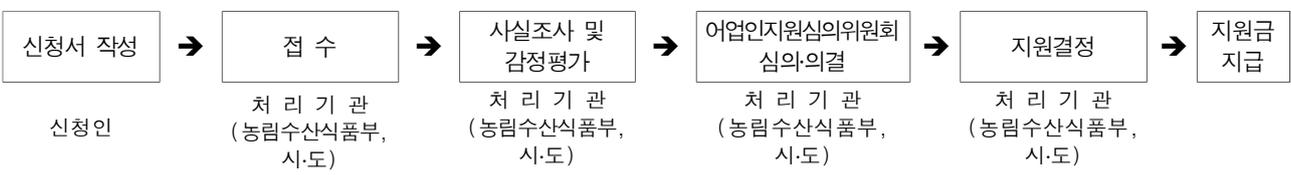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2톤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5톤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이 확인한 서류 또는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

처리절차



[] 어업 [] 어획물운반업 폐업지원금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어업허가 또는 어획물 운반업 등록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 (어업허가의 경우)	종 류	명 칭	어구의 규모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명			
	어선번호	건조일자		
	톤 수	선체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기 타	승선원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어획물운반업)의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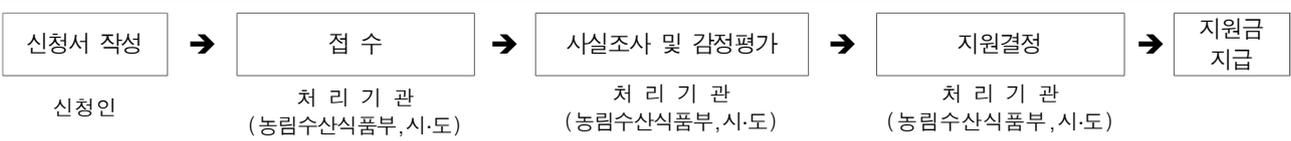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허가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사본 1부 2.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선박의 등록관청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한합니다) 3.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4. 선박등기부등본 1부 5.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이 확인한 서류 또는 어업이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6.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폐지동의서 1부
------	-------------------------------------------------------------------------------------------------------------------------------------------------------------------------------------------------------------------------------------------------------------------------------------------------------------------------------------------------------------------------------------------------------------------

처리절차



보조금 교부결정서

보조사업명		
계약자보조 사업자 및 교부결정액	보조사업자	성 명
		주 소
	예산액	
	금회 교부결정액	
	교부결정 잔액	
계약내용	1.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어선감척사업 2. 잔존가치 평가액 및 폐업지원금	
예산과목		
보조조건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오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도지사) 직인

어선·어구 등 매입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어업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 류	명 칭	어구의 규모
주조업구역				
어선의 지원	어선명			
	어선번호		건조일자	
	톤 수		선체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젤		기관의 마력	
어선·어구 이외의 장비의 명칭·수량· 규격				
기 타	승선원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선진화에 따른 불용 어선·어구 등의 매입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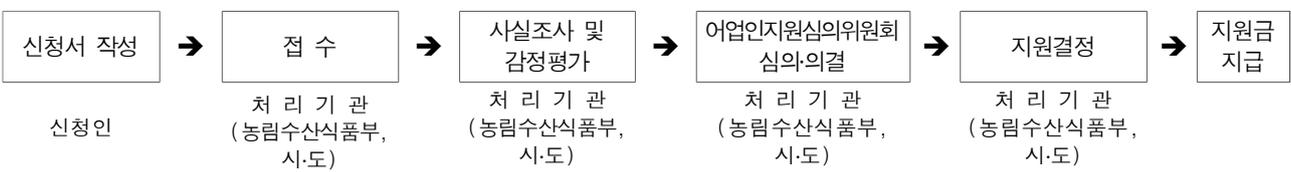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 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 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이 확인한 서류 또는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

처리절차



경영개선지원금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어업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 류	명 칭	어구의 규모
주조업구역				
어선의 지원	어선명			
	어선번호	건조일자		
	톤 수	선체재질		
	기관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육상디젤 <input type="checkbox"/> 디젤		기관의 마력
경영개선지원금 신청금액(천원)			신청사유 및 내역(필요시 별지 사용)	

기 타	승선원수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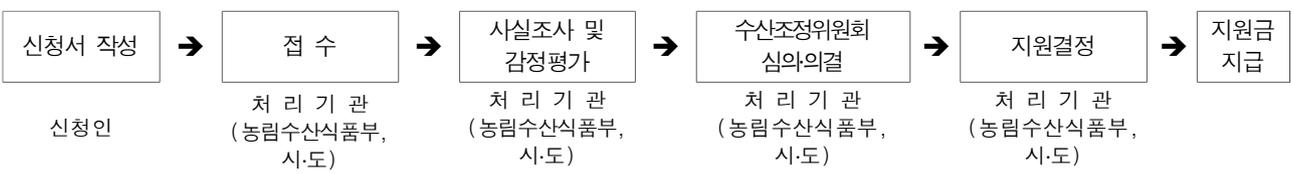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 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 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이 확인한 서류 또는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

처리절차



제 5 장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및 제도적 개선방안

제 1 절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추진 방안

1. 근거 및 내용

- 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관련 조문 : 제4조부터 제7조
- 조사내용 : 연근해어선의 업종별 · 지역별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 등

2. 추진 방식(안)

<단기> : 한국어촌 · 어항협회 등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을 활용 초년도('12) 사업 추진

- 사업비 보조 : 기존 조사사업비를 활용
- 추진방법
 - 업무 위탁형식으로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2. 6월~'13. 2월

<중장기> : (사)어업조사협회(가칭)을 설립('13년 이후), 전문조사기관으로 육성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동 업무 위탁

- 조직규모 : 계약직원(3명), 신규 채용(8~9명)
- 사업비 보조 : 12억원 내외
 - * (사)어업조사협회(가칭)에서는 위 사업 이외에도 ① 정부 및 민간 연구용역 수탁, ② 조사정보 간행물 판매, ③ 어업인 등에게 정보제공 등을 통한 자체 수익 사업 실시

3. 참고 사항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제정으로 「연근해어업 총조사」제도가 폐지되고, 「연근해어업 실태조사」제도가 신설됨
 - 실태조사 사업비는 연근해어업 총조사 사업비('10년도 6억원)에 추가증액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어업조사협회(가칭)에서 자체사업 등으로 재정이 늘어날 경우 지원규모 축소 검토

제 2 절 연근해어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1. 어업면허 제도

(1) 현 황

- ‘10년말 현재 면허어업 건수는 13,409건, 면적은 266,717ha
 - 처분권자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외해양식어업은 장관
 - 유효기간 : 10년, 이후 10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허가 가능
- 정치망, 마을, 양식(해조류, 패류, 어류)어업 등은 공유수면에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반영구적 어업 영위
 - 어업권이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수산업법」에서 정한 것 외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우선순위는 신청일 이전 5년간 그 신청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종사한 자로서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 1순위

(2) 문제점

- 1) 면허어장의 소유개념에 따른 신규진입의 곤란성
 - 특정어장의 배타적·영구적 이용에 따라 현행 면허어업 제도는 어장이용의 폐쇄성을 초래하므로써 어장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의욕과 능력 있는 젊은 인력의 진입이 곤란
 - 면허제도가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어장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어업주체 세력의 보수화 초래 및 일부 조직 관료적 병폐 초래
- 2) 비효율적 어장이용의 관행화
 - 양식어업의 종류도 품종위주로 세분화되어 있어 어업여건 변화에 부응한 탄력적 어업경영 및 발전저해
 - 어촌계 어업권(마을어장, 패류양식어장)의 경우 포획·채취수단이 없고, 고령화 등으로 관리능력이 없어 채취수단(해녀, 잠수기)을 임대 사용하거나 관리능력이 있는 특정인에게 어장을 임대하는 등으로 수익성 저하 등 어장의 효율적 이용에 심각한 지장초래

(3) 검토방향

1) 면허어장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이용개념 확립 방안 마련

- 전면실시는 어업인 반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우선 어촌계, 조합 등의 해조류, 패류양식 면허 등에 대하여 추진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인 면허어장까지 확대방안 검토
 - 면허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될 경우 담보설정이 어려워 용자(영어자금) 곤란에 따른 금융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
 - 면허어업별 생산성 표준(기준)을 개발, 어장이용료 제도 도입

2) 어업면허 부여의 우선순위 강화 검토

- 면허어장을 부실하게 경영한 자, 수산관계법령 상습위반자 등에 대한 퇴출요건 강화 및 신규 인력 유입방안 강구

3) 면허어업의 종류 통폐합 등 검토

- 품종별 양식어업제도를 어업여건에 따라 여러 품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양식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어업의 종류 통폐합
 - 품종별수협, 품종별단체, 지자체 등과 우선 공론화 과정 필요
- 기타 마을어장 포획·채취수단 개선 및 생산성 향상방안 강구

4) 어업권 관리 강화 방안 강구

- 어업권의 이전·분할·변경 요건 강화
- 어업권자에게 어업권 관리 및 경영기록 유지 의무 부여, 정기적 평가제도 도입, 평가결과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여부 검토
- 면허어업별 생산성 표준(기준)제 도입을 통한 양식어장 관리방안

5) 면허 유효기간 재검토

- 면허어업의 종류별 유효기간 제도 도입 검토
- 면허어업 일제 갱신제도 도입방안 강구

2. 어업허가 제도

(1) 현 황

□ '10년말 현재 허가어업은 5개어업, 48개업종에 허가건수는 7만2천여 건

	계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업 종 수	48	21	8	12	2	5
허가건수	71,520	3,276	58,091	6,540	1,329	2,284

- 허가 처분권자는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이며, 유효기간은 5년이나 재허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어업경영 가능
- 어업허가 종류별 처분권자
 - 근해어업 : 장관(시·도지사에게 위임)
 - 연안어업 :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
 - 구획어업, 육상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 : 시장·군수
-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 등에 대하여는 허가정수에 불구하고 새로운 어업허가 부여

(2) 문제점

- 이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조건적 재허가 제도는 허가 유효기간이 사실상 무의미하여 신규인력 진입 곤란
 -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고, 만료 시 자원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규허가를 할 수 있으나, 개별허가 마다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달라 어업별 자원상태에 맞는 어선세력 및 자원관리가 사실상 곤란
 - 허가를 받은 어업자는 불법여부에 관계없이 유효기간만료(5년)시 재허가 됨으로써 어업구조 개편 장애, 신규인력 진입곤란 및 고령화 등 문제 대두
 - 또한, 허가정수는 자원의 상태, 당해어업 경영자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허가정수는 조업구역별 자원상태 보다는 연근해 전체 자원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조업구역별 어업경영 불균형으로 인한 어업인 불만 가중
- 어업분류 방식(연안어업 및 근해어업)과 조업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분쟁 문제
 - 근해·연안·구획어업의 구분을 선박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은 조업구역 구분이 없어 자원남획 및 조업구역분쟁 등의 원인으로 작용

- 기타 어업허가의 물권적 권리화에 따른 문제점 등
 - 어업허가는 권리가 아님에도 경제적으로 특권화, 이권화되어 있어 어업경영개선을 위한 투자를 어렵게 하고, TAC 등 어업관리제도의 시행을 저해

(3) 검토방향

- 연근해어업의 재분류 검토
 - 업종별 통폐합, 어업허가정수 재조정 및 연·근해어업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
 - 어업의 종류를 어선규모 또는 조업구역에 따라 구분하거나, 전국 통일적 규범이 필요한 어업 또는 지역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어업으로 구분하여 재검토
- 선복량제도의 보완
 - 연안어업의 상한톤수 및 근해어업의 업종별 상한톤수 개선
(다만, TAC 등 자원관리방안과 기관마력 제한 방안 검토)
 - 합리적 경영규모 및 선원복지 등을 고려한 어선선진화 방안 검토
- 어업허가 일제갱신(허가)제도 도입
 - 허가기간 만료시 조업실적, 경영불량자, 관계법령 상습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여부 사전심사 등 우선순위 검토
 - 어선·어구 시설물 임차자에 대한 어업허가 배제 방안 검토
 - 어업허가 일제갱신제도는 행정조직 등 시행상의 문제 등을 감안, 특정 업종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 검토
- 어획노력가능량 제도 도입 검토
 - 업종별 어구사용량, 망목, 조업기간(특정시기), 조업구역 등 어업현실과 자원관리측면 등을 고려, 어획노력량 제한방안 검토
 - 어획 대상어종이 정해진 업종의 혼획을 허용제도 도입, 혼획어종 위판 등 관리방안 강구

참 고 문 헌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009.12, 농림수산
식품부

윤현석, 농어업용 면세유제도의 개선방안, 조세학술논문집 제23집 제1호(2007)

김대현 · 강연실, 연근해어선감척에 따른 어업인 실업대책방안 연구, 한국도서연구 Vol.22,
No.1, 2010, 한국도서(섬)학회